

「교곡천 하류 하천재해예방사업」

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

번호	질의 내용	답변 내용	비고
1	<p>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-2 제안기준 안내사항-마. 공사비산출기준에서 9)항목 “관급계약 시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보험료(산업안전보건비, 퇴직공제부금비, 환경보전비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는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.”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관급 계약 시 물품계약이 아닌 공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.</p> <p>(관급자재로서 물품계약은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이 아님)</p>	관급자재로서 물품계약으로 진행	